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22. . .
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시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화장지원금의 도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나 향후 제도 시행의 안정성과 우리 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지원 상한액을 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10조의2제4항에 단서 조항 추가
 - 단서조항 : 단, 지급상한액은 30만원으로 한다.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화장지원금은 별표2에 따른 화장장 사용료 중 구미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음 “단, 지급상한액은 30만원으로 한다.”를 추가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p><u>제10조의2(화장지원금)</u> <u>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추모공원이 아닌 다른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u></p> <p style="margin-left: 2em;"><u>1. 화장시설의 공사 또는 재난사고, 고장, 수리 등으로 화장이 불가능한 경우</u></p> <p style="margin-left: 2em;"><u>2. 시 화장시설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u></p> <p><u>② 제1항의 경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u></p>	<p>제10조의2(화장지원금) 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같다.

1.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사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2.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장사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법 제2조 제16호를 따른다.

④ 화장지원금은 별표2에 따른 화장장 사용료 중 구미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④ 화장지원금은 별표2에 따른 화장장 사용료 중 구미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단, 지급상한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⑤ ~ ⑪ (개정안과 같음)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⑥ 화장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등 지급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날부터 2개월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화장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⑧ 화장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사망진단서

3.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화장증명서

6.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7. 신청인 통장사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⑨ 제8항제1호의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는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구미시추모공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미시추모공원은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⑪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
장지원금을 지원받았을 때
에는 해당 금액을 지체 없
이 환수하여야 한다.